

# 질문 및 답변자

○ 일 시 : 2012. 05. 30(수) 10:00~

## 군정질문 답변서

- 질문일시 : 2012. 05. 30(수)
- 질문의원 : 조 기 원 의원
- 질문내용
  1. 도립 거창대학 졸업생 채용과 관련하여?
  2. 인구증가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3. 마리면 음식특화지구 육성과 관련하여?
  4. 거창읍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의원	질문내용	답변자	페이지
조기원	1. 도립 거창대학 졸업생 채용과 관련하여?	군수	1
	2. 인구증가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	6
	3. 마리면 음식특화지구 육성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11
	4. 거창읍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과장	15

# 군 정 질 문 답 변 서

질문일시 : 2012. 05. 30(수)

질문의원 : 조 기 원 의원

질문내용

1. 도립 거창대학 졸업생 공무원 채용 관련

답 변 자 거 창 군 수

## 군정질문 문답 요지

### 질문 요지

거창대학 졸업자의 공무원 채용은 거창군의 교육도시로의 지속발전과 인구증가의 실질적 수단으로 우수인재가 몰려드는 동기 부여를 위해 필요하며 경남도내 각 지자체 확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거창군이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 하신지?

### 답변 요지

- ① 공무원 채용의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을 원칙으로 함
  - 대학생 경력경쟁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우수한 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임용하여 일정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음
- ② 거창지역 대학생 선발 현황
  - 장학생 선발 : 2008년 2명
  - 공무원 임용 : 2009년 토목9급 1명, 2010년 사회복지 9급 1명
- ③ 문제점
  - 2011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학지원 특채제도의 문제점 지적
  - 지적내용
    - ▷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제도 운영으로 실효성 저하
    - ▷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의 편법 운영사례 발생
    - ▷ 지방도립대학 육성수단으로 활용 등
- ④ 향후 처리계획
  - 중앙정부차원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 위하여
  - 장단점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할 계획임

## 군 정 질 문 답 변

[답변 : 군 수]

### □ 이 흥 기 군수입니다.

- 먼저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조기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조기원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조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립 거창대학 졸업생 / 공무원 채용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그렇게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  
<조기원 의원님 양해>
- 양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조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 거창대학 졸업생의 공무원 채용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거창대학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써 거창대학에 우수 인재가 몰려들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교육도시의 면모도 과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잘 아시다시피 거창에는 경남도립 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 등 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4에 의하면 우수한 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각급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 졸업 후에는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2008년에 장학생 2명을 선발하여 2009년에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 그러나 2011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제도가 목적의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뿐 만 아니라

특히 지방대학 육성수단으로 활용됨은 부적절하며, 선발과정의 편법, 자격미달 장학생 선발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거창지역 장학생 임용제도를 중단 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관련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제도적 한계가 걸림돌입니다 마는 지역차원에서는 조기원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 따라서 이 제도를 다시 군 차원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의 질문취지를 반영하고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인원을 장학생으로 특별 임용하기 위해서
- 우선 2013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조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질문일시 : 2012. 5. 30(수) 10:00 ~
- 질문의원 : 조기원 의원
- 질문내용  
2.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답변자 : 보건소장

## 군 정 질 문 답 변 요 지

### □ 질문요지

- 민간 영역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

### □ 답변요지

- 정부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제한된 공간과 공공시설에 저항력이 약한 산모 및 신생아를 간호할 경우 감염등의 문제로 공공기관에서의 육성 정책 지양
- 지난해 경남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서부권내 사천, 거창지역에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실시를 위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  
⇒ 부결(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가동률 저조 예상)
- 경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 대신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상정 가결  
⇒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2011.10.13)
- 현재 경남도 추경 예산 확보하여 산후조리 비용 지원 계획중으로 향후 우리 군에서는 추이를 지켜보며 민간영역 산후조리원 운영 지원과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대한 다각적 방안 모색하여 추진 계획임.

##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답변 : 보건소장]

### □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 평소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조기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 □ 민간영역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근 3년 동안 우리 군 출생아수와 관내 산부인과 분만 건수는 2009년(434명/164건), 2010년(419명/124건), 2011년(440명/99건)으로 출생아 평균 430명이며 관내 산부인과 분만건수는 평균 129명으로 분만건수 감소 요인으로는 노산과 고위험임산부의 안전한 분만을 위해 대도시 병원을 선호하고 있고, 또한 관내 산부인과에서도 분만을 꺼리며 도시지역 병원 분만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부에서는 산후조리원 지원의 성질과 비슷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과견하여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해 작으나마 산모·신생아 관리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난해 지원은 81명의 42,603천원입니다.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금액**

- 단태아 기준(12일)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 596,000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상 : 550,000원
- 쌍생아 기준(18일)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 1,134,000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상 : 1,088,000원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기준(24일)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 1,701,000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상 : 1,655,000원

- 또한, 정부에서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제한된 공간과 공공 시설에 저항력이 약한 산모 및 신생아를 간호할 경우 감염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 육성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현재 경남지역에서는 민간인에게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은 없으며 통영시에서는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1. 4. 25)하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 지난해 경남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원정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서부권내 사천, 거창

지역에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결 되고, 대신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이 상정 가결되어 현재의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가 제정(2011.10.13)이 되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지원대상은 도내 1년이상 거주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등이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산모가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현재 경남도에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계획중에 있으며, 동 조례안에 따른 지원이 시행이 되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과 더불어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우리 군에서는 추이를 지켜보며 민간 영역 산후조리원 운영 지원과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조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영역에서 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질문일시 : 2012. 05. 30(수)

● 질문의원 : 조 기 원 의원

● 질문내용

3. 마리면 음식특화지구 육성과 관련하여?

답 변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군정질문답변요지

## □ 질문요지

3. 마리면 음식특화지구 육성과 관련하여
- 국도3호선 개통으로 인한 주변상권 침체
  - 주변에 다양한 사업추진
  - 소곡마을 앞 하천 관광요소 갖춘 수변공원
  - 원학골의 관문/ 마리면 소곡~소재까지
  - 30여개 넘는 음식촌 기 형성/적절한 지원/음식특화지구 육성

## □ 답변요지

- ① 국도 3호선 개통으로 인하여 마리면 주변 상권이 오히려 침체되어 있다는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
- ② 마리면 원학골의 관문으로 현재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내지 추진되고 있어 유동인구 증가가 기대됨에 따른 음식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
- ③ 가조면 마상리 일원을 “음식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
- ④ 마리면을 포함한 여타 지역에 대해 제반여건을 검토한 후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점진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음

##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답변 : 농업기술센터소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영 만입니다.
- 조기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리면 음식특화지구 육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국도 3호선 개통으로 인하여 마리면 주변 상권이 오히려 침체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리면은 원학골의 관문으로서, 현재는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내지는 추진되고 있어 유동인구 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음식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 현재, 우리군에서는 가조면 마상리 일원을 “음식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군수공약사업인 『향토음식촌 개발』 과 도지사 공약사업인 『서부권 7개시군 관광지주변 먹거리 조성』 을 계획하면서, 사업대상지 선정에 위한 용역을 각각 시행한 결과, 주변 관광자원과 접근성, 관광객 등 유동

인구와 기존 음식점의 군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공히 가조면 마상리가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현재 도비 1억4천만원 등 총 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반기부터 간판과 안내판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 동 지역을 외식업지구로 지정 신청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군에서는 “가조 음식특화거리”를 우리군을 대표하는 음식촌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리면을 포함한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점진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조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군 정 질 문 답 변 요 지

## 군 정 질 문 답 변 서

● 질문일시 : 2012. 05. 30(수)

● 질문의원 : 조 기 원 의원

● 질문내용

4. 거창읍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답 변 자 : 도시건축과장

### □ 질문요지

1. 거창읍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 ① 도시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림교의 개통으로 읍사무소로 이어지는 구간에 차량통행이 급증하면서 편도 1차선의 도로로서 극심한 통행난을 겪고 있음
- ② 또한 아림슈퍼에서 3교주유소 구간은 도로 양측으로 인도가 없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③ 중장기적으로 이 곳에 대한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함.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 □ 답변요지

1. 아림교의 개통으로 읍사무소로 이어지는 구간에 차량통행이 급증하면서, 편도1차선 도로로서 극심한 통행난을 겪고 있음

- ① 아림교 개통이후 통행량증가 고질적인노상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체증 사고위험등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대책이 필요함  
여건상 빠른시일내 도로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경찰서 교통담당부서와 협의결과 불법주차만 해결되면 통행난이 해소 될 것으로 검토 주차금지구역지정 추진
- ② 지금까지 추진사항
  - 2012. 03. 09 : 경남지방경찰청 주차금지구역지정건의
  - 2012. 04. 30 : 교통심의위원회상정 주차금지구역지정가결
- ③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 2012. 06. : 교통표지판 차선도색등 부대시설 정비
  - 2012. 07. : 편면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토록 하면서 위법위법행위단속에 철저를 기해 아림교 개통시에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 답변요지

2 아람슈퍼에서 3교주유소구간 도로양쪽 인도가 없어 상시 위험에 노출 중장기적인 관리계획수립 체계적 집행에 대해

- ① 본 구간은 기 형성된 주택밀집내의 소로로서 인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통행 보행자통행불편과 보행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인도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폭이 최소 중로이상이어야 하나 거창읍 도시지역내 군 계획상 12m미만의 소로가 많은 실정임
- ② 특히 이곳의 주변여건을 보면 이미 시가지가 형성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인도설치를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불가피 도로를 확장할 경우 55가구의 건축물이 편입 이중 2~4층건물이 14가구이며 내구연한이 10년 미만 양호한 건축물 다수 포함소유자들의 입장도 감안되어야 함
- ③ 또한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면 보상비 90억원 공사비 20억원 총 11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도 사전 검토되어야 함
- ④ 보행자의 보행권보장을 위해 인도설치는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장 시행하기에는 투자효율성 및 주변여건과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됨
- ⑤ 2개 노선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의 좀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

##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답변 : 도시건축과장]

### □ 도시건축과장 오 순 택입니다.

- 조기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읍 도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아람교의 개통으로 읍사무소로 이어지는 구간에 차량통행이 급증하면서, 편도1차선 도로로서 극심한 통행난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람교는 완공이 되지 않았으나 교통량분산으로 시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임시개통 하였습니다
- 아람교 개통이후 통행량증가와 고질적인노상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고위험등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교통소통 대책이 필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빠른시일내 도로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경찰서교통담당부서와 협의결과 불법주차만 해결되면 통행난이 해소 될 것으로 검토되어 주차금지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 2012. 03. 06 : 경찰서와 공동으로 주변현황조사
  - 2012. 03. 09 : 경남지방경찰청 주차금지구역지정건의
  - 2012. 03. 27 : 경남지방경찰청 현장조사실시[주변상가 건의사항⇒편면주차]
  - 2012. 04. 30 : 교통심의위원회상정 주차금지구역 지정가결⇒편면(격일제)주차결정 받아 한쪽만 주·정차 하도록 계도
-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 2012. 05. : 편면주차에 대한 홍보계도
  - 2012. 06. : 교통표지판 차선도색등 교통시설 정비
  - 2012. 07. : 편면주차금지구역지정운영토록 하면서 위법행위단속에 철저를 기해 아림교 개통시에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아림슈퍼에서 3교주유소구간 도로양쪽 인도가 없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에 반영 하여 체계적 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름슈퍼에서 상동정미소 구간은 소로 1-10호선으로 연장 384m 폭 10m이며  
상동정미소에서 3교주유소구간은 소로 2-36호선으로 연장 315m 폭8m로 총 연장 699m가 되겠습니다
- 본 구간은 기 형성된 주택밀집내의 소로로서 인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통행으로 인해 보행자통행 불편과 보행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인도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폭이 최소 중로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나 거창읍 도시지역내 군 계획상 12m 미만의 소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 특히 이곳의 주변여건을 보면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인도설치를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불가피하며 도로를 확장 할 경우 55가구의 건축물이 편입 이중 2~4층건물이 14가구이며 내구연한이 10년 미만의 양호한 건축물도 다수 포함되어 소유자들의 입장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면 보상비 90억원 공사비

20억원 총 11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도 사전 검토 되어야 합니다

매력있는 창조거창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12. 5. 24 ~ 5. 31)

- 보행자의 보행권보장을 위해 인도설치는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장 시행하기에는 투자효율성 및 주변여건과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따라서 군관리계획 재정비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개 노선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의 좀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명품도시의 기틀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조기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읍 도시 계획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정질문 답변서

- 질문일시 : 2012. 05. 30(수)
- 질문의원 : 류 영 수 의원
- 질문내용
  1.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2. 웅양면 공설공원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3. 위천면 황산2구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 질문 및 답변자

○ 일 시 : 2012. 05. 30(수) 10:00~

질문의원	질문내용	답변자	페이지
류영수	1.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	1
	2. 응양면 공설공원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생활 지원실장	7
	3. 위천면 황산2구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문화관광 과장	15

## 군정질문답변서

- 질문일시 : 2012. 05. 30(수)
- 질문의원 : 류영수 부의장
- 질문내용 :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 관련

답변자 거창군수

## 군정 질문 문답 요지

### □ 질문요지

아림로 특화거리 운영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

- ① 평가 결과가 현행대로 유지쪽으로 나온다면, 경사판 등 공작물 설치가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 맞지 않더라도 현행대로 계속 유지 하겠는지와
- ② 평가 결과가 보완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불법 공작물인 경사판은 없애고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보완책으로 도로변 주위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 □ 답변요지

경사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상가번영회에서 차량이용객의 편의도모와 상가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아림상가번영회에서 자체 제작 설치한 시설로써

향후 최종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군정 질문 답변

[답변 : 군 수]

### □ 이흥기 군수입니다.

-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영수** 부의장님께 군정의 책임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부의장님께서서는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 웅양면 공설공원묘지 조성, 위천면 황산2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크게 3개 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류영수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부의장님, 그렇게 하도록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  
< 류영수 부의장님 양해 >
-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림로 특화거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현행대로 계속하여 유지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경사판 등 공작물 설치가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 맞지 않더라도 현행대로 계속 유지 하겠는지와
- 둘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보완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현재 설치된 불법 공작물인 경사판은 없애고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보완책으로 도로변 주위에 주차장 확보를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아림로 특화거리는 옥외광고물 시범구간 지정을 시작으로 전선지중화, 불법주정차 없는 보행자 위주의 깨끗한 도로를 조성하고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업이 보행자 위주의 도로 구조로 조성하다 보니 상가변영회에서 고객 차량의 접근성 부족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군과 의회, 상가변영회의 접점을 찾아 보고자 아림로 특화거리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으며, 최종 평가위원회는 6월중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경사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상가변영회에서 차량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상가변영회의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자체 제작·설치한 시설입니다.
- 그동안 수차레에 걸쳐 도로구조에 맞지 않은 시설물임으로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평가위원회의 의견 상충으로 현재까지 유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군에서는 향후 최종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 다음은 도로변 주변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로터리에서 거창교 구간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서 사업추진 전부터 이곳에 주차장은 없었으며, 불법 주·정차로 교통정체가 심했던 구간이었습니다.

○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구간에 별도의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 절대공간이 부족할뿐 만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류영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질문일시 : 2012. 05. 30(수)

● 질문의원 : 류 영 수 의원

● 질문내용

2. 응양면 공설공원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답 변 자 : 주민생활지원실장



# 군 정 질 문 답 변 요 지

## □ 질문요지

### 군에서 웅양면에 조성한 공설공원묘지와 관련

- 첫째, 당초 설계시 충분한 부지확보 및 완벽한 시공설계를 하지 못한 사유는?
- 둘째, 부지가 붕괴 되었을때 당시 바로 공사업체에 하자 보수를 시키지 못하고, 1개업체의 안전진단 결과서에만 의존해 전액 군비로 보수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 셋째, 보수공사(2차) 설계 도면을 살펴보면, 옹벽의 높이가 20m정도로 너무높아 2차 붕괴사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금회 매입한 토지를 활용, 남쪽사면 경사면에도 묘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 할 의향은?

## □ 답변요지

- ① 사업계획 수립시 웅양면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웅양면의 인구와 공설공원묘지의 수요추정, 예산확보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 규모의 공원묘지를 부지의 추가매입 없이 기존 공설묘지(11,944㎡)의 범위 내에서 조성하기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것임
  - 사업발주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쳐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토사다짐, 석축쌓기, 잔디식재 등을 설계에 반영 시공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보다 완벽한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조치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음
- ② 공설공원묘지 좌측이 붕괴된 시점이 집중호우가 쏟아진 때로서 붕괴 원인이 시공상의 잘못인지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전문기관에 진단이 필요했음

- 용역결과를 2010년 8월 총 강수량은 475mm를 기록하였으며 8월 10일부터 17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성토 사면이 포화상태가 되어 사면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은 것임

### ③ 설계변경에 반영하려고 검토한 결과

- 묘지면적 확장부분에 대하여는 웅양면의 실정으로 볼 때 현재 조성된 11,944㎡만 해도 충분하며, 구태여 묘지면적을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보수공사 시공면에서 검토한 결과
  - 중앙진입도로 남쪽묘역을 깎아 낮추고 추가 편입되는 농경지로 묘역을 확장 시공할 경우 토공 이동량이 증가되어 공사비의 증액과 또다시 상단부 침하현상이 우려되고 남쪽묘역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길이 200m, 폭3m규모의 또 다른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며 전체 공사비가 약 1억원정도 증가가 예상됨
- 현재 보수계획은
  - 설계변경 및 시공 방향은 발주된 공사금액 내에서 이미 조성된 묘지면적을 기준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며
  - 비탈법면 경사를 최대한 완만히(1:2) 하고자 추가 편입되는 농경지 방향으로 사면기초를 2~6m 정도 물려내어 시공토록 하고,
  - 사면 기초 전면에 약 2m폭의 자연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를 배제할 계획임

##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답변 : 주민생활지원실장]

### □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 류영수 부의장님께서 웅양공설공원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먼저, 당초 설계시 충분한 부지확보 및 완벽한 시공설계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웅양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매장되어 있는 일반공설공원묘지를 정비하여 묘지난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국·도비 및 군비 790백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5월에 착공하고 2009년 9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을 위한 계획수립시에 웅양면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웅양면의 인구와 공설공원묘지의 수요추정, 예산확보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매장 200기, 자연장 500기 규모로 부지의 추가매입 없이 기존 공설묘지 11,944㎡의 범위 내에서 조성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 사업발주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쳐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토사다짐, 석축쌓기, 잔디 식재 등을 설계에 반영 시공하였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보면

- 그 당시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이번에 매입한 공설공원묘지 남쪽 부지를 매입하고 사면 높이를 낮추거나, 구배를 완화하고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 시공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 다음은, 부지가 붕괴 되었을 때 당시 바로 공사업체에 하자 보수를 시키지 못하고, 1개업체의 안전진단 결과서에 의존해 전액 군비로 보수사업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공설공원묘지 좌측이 붕괴된 시점은 2010년도 8월 태풍 “덴류”의 영향으로 8월 15부터 8월 17일까지 3일동안 265mm(최대시우량 37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때입니다.
- 성토사면의 붕괴 원인이 설계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공사하자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당연히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하나 시공사에서는 집중호우

로 인한 붕괴라고 주장하고 또 현장 확인 결과 시공상의 잘못인지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 사면 붕괴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보수공법과 소요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2010. 11월에 전문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링 업체에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 용역결과를 보면 웅양면의 2010년 8월 총 강수량은 475mm를 기록하였으며 8월 10일부터 17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성토 사면이 포화상태가 되어 사면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 또한 1개업체에만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역보고서의 내용과 참여기술자의 기술력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도 비슷한 결론을 낼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웅양공설공원묘의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2011년도 8월에

예비비 450,000천원의 사용승인을 받아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 재난관리과로 공사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보수공사 설계에 옹벽의 높이가 20m정도로 너무 높아 2차 붕괴사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금회 매입한 토지를 활용, 남쪽사면 경사면에도 묘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 할 의향이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류영수의원님의 의견을 설계변경에 반영하려고 검토한 결과 묘지면적 확장부분에 대하여는 웅양면의 실정으로 볼 때 현재 조성된 11,944㎡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묘지면적을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보수공사 시공면에서 검토한 결과  
- 중앙진입도로 남쪽묘역을 깎아 낮추고 추가 편입되는 농경지로 묘역을 확장 시공할 경우 토공 이동량이 증가되어 공사비의 증액과 또다시 상단부 침하현상이 우려 되고  
- 또한, 남쪽묘역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길이 200m, 폭3m규모의 또 다른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로 합니다.

- 그리고 진입로 북쪽묘역과 비교할 때 남쪽묘역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고, 연접한 산지부의 낙엽송 그늘로 인해 묘지이용 기피현상도 우려되고
- 전체 공사비를 검토한 결과 약 1억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 다음은 현재 보수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설계변경 및 시공 방향은 발주된 공사금액 내에서 기 조성된 묘지면적을 기준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비탈법면 경사를 최대한 완만히(1:2) 하고자 추가 편입 되는 농경지 방향으로 사면기초를 2~6m 정도 물려내어 시공토록 하고,
- 사면 기초 전면에 약 2m폭의 자연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를 배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류영수 부의장님께서 웅양공설공원묘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질문일시 : 2012. 05. 30(수)

● 질문의원 : 류영수 의원

● 질문내용

3. 위천면 황산2구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

답변자 : 문화관광과장

## 군 정 질 문 답 변 요 지

### □ 질문요지

○ 1억여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담장 벽화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첫째, 벽화공사를 시행한 업체는 어디이며, 부실 시공한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와 전문가에 의뢰해서 부실 공사여부 분석을 하였는지?

둘째, 위천 황산길 벽화가 2012년 2월경 들뜸 현상과 깨짐 현상 등으로 훼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 □ 답변요지

- ① 황산2구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은 한국미술협회 거창지부(지부장 민병주)에서 주관하여 시행하였음
- ② 2012. 2월 모 언론에서 “황산마을 벽화 들뜸 현상과 깨짐 현상 발견”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어 2. 23일 현장 확인 후 한국미술협회 거창지부장 등을 불러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였음
- ③ 문제가 된 벽면은 벽화 총 길이 266m 중에서 약 20m 정도로써 하자발생 원인은 담장지붕이 없는 노후화된 담장벽면의 균열 부분과 상단부, 그리고 뒤쪽 벽면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생긴 도막 박리 현상임
- ④ 2012. 2월경 벽화 훼손이 발견되었으나 동절기에는 작업을 할 수 없었으며, 날씨가 풀리면 4월말까지 보강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번 봄에 잦은 강우로 작업이 지연되었으며 5월 22일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답변 : 문화관광과장]

### □ 문화관광과장 이 상 준입니다.

- 류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면 황산2구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천면 황산2구 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은 2010년 8월 각 직능단체 간담회 시 미술협회의 건의가 있어 2011년 문화관광과 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미술협회 거창지부와 민족미술인협회 거창지부가 공동 참여하는 보조사업으로 한국미술협회 거창지부(지부장 민병주)가 주관하여 2011년 4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지난 2월 모 언론에서 황산마을 벽화 들뜸 현상과 깨짐 현상 발견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어 2. 23일 현장 출장하여 확인 하고, 한국미술협회 거창지부장 등 관계자를 불러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 확인결과 문제가 된 벽면은 벽화 총 길이 266m 중에서 약 20m 정도로서, 하자발생 원인은 담장지붕이 없는 노후화된 담장벽면의 균열부분과 상단부, 그리고 뒤쪽 벽면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일부 벽화에 도막박리 현상이 발생 되었습니다.
- 이 벽면은 당초 벽화작업 과정에서 담장의 노후화로 박리현상 발생이 우려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동네 골목의 초입부분이고 전체 골목벽화의 완성도를 고려해 이 부분을 제외 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도막박리 현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벽화를 깨끗이 지우고 담장벽의 상단부와 뒤쪽에 방수처리를 해서 재시공 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어 조만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보수 작업이 늦어진 이유는 발견당시는 동절기라 작업이 어려웠고, 날씨가 풀리면 4월말까지 보강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번 봄에 잦은 강우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어 5월 22일부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산2구 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전통한옥 마을인 황산1구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황산1구 마을과의 미관 조화를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 아울러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문화 예술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목적도 있어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 황산2구 마을 벽화사업은 시공 후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한옥마을과 함께 새로운 볼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 하자부분 보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향후 잘 관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류영수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